

레이와(令和)2년 5월 1일
출입국 재류관리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류 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류자격 취소수속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입관법 별표 제 1 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유학' 등)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류 자격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확대나 감염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면서 해당 재류자격에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재직하고 있던 일하는 곳의 영업부진(또는 영업자숙)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 (2) 재직하고 있던 일하는 곳을 퇴직한 후 인터넷 등으로 재취직처를 찾는 활동을 하였거나, 재취직할 수 있을 전망이 있지만 회사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 (3) 재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휴교가 된 경우(진학처의 교육기관이 휴교가 된 경우도 포함한다.)
- (4) 재직하고 있던 교육기관이 폐교한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 (5)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포함한 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장기화되어 교육기관을 휴학하고 있는 경우